

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4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4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 19.(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교통행정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,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주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“관광휴게시설”을 추가함.
(안 제15조 제2항)
-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9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웃상호간의 선린 주차문화 조기정착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과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
-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 및 공공성 제고와 도시미관을 일신시킬 수 있으며,
- 특히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단서조항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규정 되어 있는 바,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토록 개정한 조례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